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 제조업 중심으로 -

윤조덕<sup>†</sup> · 한충현<sup>\*</sup>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2006. 5. 4. 접수 / 2006. 9. 25. 채택)

# A Study to Revitalize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 - In Manufacturing Industry -

Jo-Duk Yoon<sup>†</sup> · Choong-Hyun Han<sup>\*</sup>

Senior Fellow in Korea Labor Institute

<sup>\*</sup>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Received May 4, 2006 / Accepted September 25, 2006)

**Abstract :**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ich is with the object of establishment of an autonomic and collaborative industrial accident prevent system, comes into force on 1995 through the administration provision of the Ministry of Labor, one year after it had legal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revitaliz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by using the survey(2005.05)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can be summarized to develop the system as the following: 1) Obligation to the appointment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nd the Extension to be appointed workplace, 2) Cooperation of the Safety/Health Manager wit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3) Gran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to make the round of the workplaces for the providing guidance to workers, 4) Employers' fulfillment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recommendations, 5) Guarantee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structions and its hours.

**Key Words :**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 1. 서 론

### 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도입배경 및 정부의 활성화 추진과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법제화된 배경은 1990년대 들어 WTO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의 경쟁 가속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와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국제적 차원의 노동기준을 설정하려는 블루라운드(BR)시대가 예고되었으며 또한 선진 산업국들에서는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는 인 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세계경제의 변화추세에 발 맞추어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업재해예방시스템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sup>1)</sup>.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 협력적 산재 예방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은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책을 위하여 정부(노동부)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1997-1999)」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제고<sup>2)</sup>를,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활성화<sup>3)</sup>를 계획·추진하였다.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5-

<sup>†</sup>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yoond@kli.re.kr

2009)」에서는 “1995년 7월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운영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4,000여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노사자율적 재해예방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을 계획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는 지난 10년간 정부(노동부)의 중장기 산재예방계획사업의 주요 항목 중의 하나이다.

### 1.2. 위촉현황

2005년 5월 현재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137명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99.0%(4,095명), 여자 1.0%(42명)이다. 직군별로는 일반 75.2%(3,111명), 건설 20.9%(864명), 사외 3.9%(162명)이다. 노조 유무별로는 44.0%가 노조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노조 연합단체 소속이다. 사무직 여부는 23.4%가 사무직, 그리고 76.6%가 비사무직이다.

### 1.3. 기존 연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의 활성화 관련 연구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운영현황 및 개선에 대한 연구(윤조덕, 1998, 윤조덕, 1999, 한국노총, 2002, 윤조덕, 한충현, 2005),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연구(박태순, 1998, 박태순, 2005),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 연구(이영순, 2002) 등으로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Table 1. The Status quo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unit: persons, %)

gender		a category of industry		
male	female	the others	construction	outside the company
4,095(99.0)	42( 1.0)	3,111(75.2)	864(20.9)	162( 3.9)
4,137(100.0)		4,137(100.0)		
position <sup>1)</sup>		worker <sup>2)</sup>		
labor union	non-labor union	office worker	non-office worker	
1,778(44.0)	2,263(56.0)	966(23.4)	3,171(76.6)	
4,041(100.0)		4,137(100.0)		

주 1) 서울 서부노동사무소 90명, 제주 노동사무소 6명 누락.  
 2) 생산반장, 주임 등 일반적 생산직급은 비사무직으로 구분.  
 자료출처: 노동부 안전정책과 내부자료, 2005. 5.

윤조덕(1998)<sup>5)</sup>의 연구에서는 안산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여부와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및 회사지원 등에 관한 설문을 하였으며, 또한 안산·안양·수원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행하여 제도 도입 초기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하였다. 윤조덕·한충현(2005)<sup>6)</sup>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박태순(1998, 2005)<sup>7,8)</sup>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의 지역협의회 현황 및 필요성,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영순(2002)<sup>9)</sup>의 연구에서는 관계법령 및 기존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실태조사 분석

### 2.1. 일반현황

본 설문조사는 2005년 5월에 이루어졌고 총 1,490부를 우편발송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가능한 설문지는 총 296부였다. 이 중 제조업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설문 응답자는 총 215명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1) 개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제조업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Table 2와 같이 총 215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응답자(214명) 중 남자가 99.1%(212명), 여자가 0.9%(2명)이다. 응답자(212명)의 평균 연령은 만 42.47세이며 40대가 48.1%(10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35.8%(76명), 50대 15.1%(32명) 순이었다.

활동지역은 응답자(215명)의 30.7%(66명)가 대구·경북지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산·경남지역 20.0%(43명), 인천·경기지역 17.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은 응답자(215명)의 25.6%(55명)가 2년 이상~4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년 이상~6년 미만 20.9%(45명), 6년 이상 18.6%(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는 응답자(214명)의 69.6%(149명)가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된 경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소속단체가 추천 10.3%(22명),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7.9%(17명) 순이었다.

Table 2. Demography-survey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gender (n=214)	male	212(99.1)
	female	2( 0.9)
age (n=212)	20s	2( 0.9)
	30s	76(35.8)
	40s	102(48.1)
	50s	32(15.1)
	average(S.D)	42.47(6.56)
area (n=215)	Seoul · Gangwon Province	9( 4.2)
	Busan · South Gyeongsang Province	43(20.0)
	Daegu · north Gyeongsang Province	66(30.7)
	Incheon · Gyeonggi Province	38(17.7)
	Jeju Island · Gwangju · Jeolla Province	36(16.7)
	Daejeon · Chungcheong Province	23(10.7)
period (n=215)	under 1 year	39(18.1)
	1 year - under 2 years	36(16.7)
	2 years - under 4 years	55(25.6)
	4 years - under 6 years	45(20.9)
	over 6 years	40(18.6)
appointment (n=214)	by oneself	14( 6.5)
	by employer	17( 7.9)
	by discussion from both sides	149(69.6)
	by one's party	22(10.3)
	the others	12( 5.6)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자 분포는 Table 3과 같이 응답자(215명)의 50.7%(109명)가 100인~299인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00인~499인 사업장 12.6%(27명), 50인~99인 사업장 12.1%(26명), 500인~999인 사업장 11.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business size & the labor Union

(unit: persons, %)				
size (n=215)		labor Union		total
		exist	not exist	
	under 49 persons	1(25.0)	3(75.0)	4(100.0)
	50 persons - 99 persons	10(38.5)	16(61.5)	26(100.0)
	100 persons - 299 persons	74(67.9)	35(32.1)	109(100.0)
	300 persons - 499 persons	22(81.5)	5(18.5)	27(100.0)
	500 persons - 999 persons	21(87.5)	3(12.5)	24(100.0)
	1,000 persons - 1,999 persons	15(100.0)	0( 0.0)	15(100.0)
	over 2,000 persons	9(90.0)	1(10.0)	10(100.0)
	total	152(70.7)	63(29.3)	215(100.0)

사업장 노동조합 유무는 Table 3과 같이 응답자(215명) 중 노동조합 있음 70.7%(152명), 노동조합 없음 29.3%(63명)로 나타났다.

2) 사업장 근속연수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기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근속연수는 Table 4와 같이 응답자(211명)의 61.1%(129명)가 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년 이상~30년 미만 20.9%(44명), 1년 이상~10년 미만 17.5%(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장 근속연수가 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기간이 2년 이상~4년 미만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이 전체 응답자(211명)의 15.2%(32명)로 가장 많았다.

Table 4. Working day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period of employment

(unit: persons, %)				
		Working day		
		under 1 year	1 year - under 2 years	2 years - under 4 years
period of employment <sup>1)</sup> (n=211)	under 1 year	.	.	.
	1 year - under 10 years	10 ( 4.7)	11 ( 5.2)	11 ( 5.2)
	10 years - under 20 years	24 (11.4)	20 ( 9.5)	32 (15.2)
	20 years - under 30 years	5 ( 2.4)	3 ( 1.4)	10 ( 4.7)
	over 30 years	.	1 ( 0.5)	.
	total	39 (18.5)	35 (16.6)	53 (25.1)

		Working day		
		4 years - under 6 years	over 6 years	total
period of employment <sup>1)</sup> (n=211)	under 1 year	0 ( 0.0)	0 ( 0.0)	0 ( 0.0)
	1 year - under 10 years	3 ( 1.4)	2 ( 0.9)	37 (17.5)
	10 years - under 20 years	28 (13.3)	25 (11.8)	129 (61.1)
	20 years - under 30 years	14 ( 6.6)	12 ( 5.7)	44 (20.9)
	over 30 years	0 ( 0.0)	0 ( 0.0)	1 (0.5)
	total	45 (21.3)	39 (18.5)	211 (100.0)

주 1) 평균 180.77개월 표준편차 72.54

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법령에 규정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5조의2 제2항)로서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건수(783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가 각각 19.9%(15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8.8%(147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시의 입회 17.2%(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감독관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건수(638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20.4%(130건)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19.9%(127건),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9.1%(12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활동기간별로 세분화하면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그리고 4년 이상-6년 미만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

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에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각각 20.9%, 20.7%, 21.3%), 6년 이상의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높았다(21.1%).

Table 6.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working day

	(unit: persons, %)				
	1 year -under 2 years	2 years -under 4 years	4 years -under 6 years	over 6 years	total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에의 참여	27 (20.9)	37 (20.7)	35 (21.3)	28 (16.9)	127 (19.9)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시의 입회	24 (18.6)	29 (16.2)	30 (18.3)	29 (17.5)	112 (17.6)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6 (4.7)	12 (6.7)	11 (6.7)	15 (9.0)	44 (6.9)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1 (8.5)	18 (10.1)	14 (8.5)	19 (11.4)	62 (9.7)
(5)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25 (19.4)	36 (20.1)	31 (18.9)	30 (18.1)	122 (19.1)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10 (7.8)	10 (5.6)	11 (6.7)	10 (6.0)	41 (6.4)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6 (20.2)	37 (20.7)	32 (19.5)	35 (21.1)	130 (20.4)
total	129 (100.0)	179 (100.0)	164 (100.0)	166 (100.0)	638 (100.0)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만을 분석하였음.  
주) 다중응답 응답자 165명, 응답건수 638건

Table 5.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unit: persons, %)

question	total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에의 참여	156 (19.9)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시의 입회	135 (17.2)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53 (6.8)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78 (10.0)
(5)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47 (18.8)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58 (7.4)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56 (19.9)
total	783 (100.0)

주) 다중응답 응답자 199명, 응답건수 783건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감독관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인 이하의 사업장과 50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10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항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0인 이상-499인 이하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항목이 가장 많았다. 또한 5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과 1,000인 이상-1,9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항목을 많이 응답하였다.

**Table 7.**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business size

(unit: persons, %)

	under 49	50 - 99	100 - 299	300 - 499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1 (7.7)	11 (16.7)	69 (20.7)	13 (17.8)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23.1)	12 (18.2)	56 (16.8)	14 (19.2)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0 (0.0)	4 (6.1)	24 (7.2)	6 (8.2)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 (15.4)	7 (10.6)	32 (9.6)	6 (8.2)
(5)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2 (15.4)	11 (16.7)	62 (18.6)	15 (20.5)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실시요청	1 (7.7)	4 (6.1)	21 (6.3)	4 (5.5)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4 (30.8)	17 (25.8)	70 (21.0)	15 (20.5)
<b>total</b>	<b>13 (100.0)</b>	<b>66 (100.0)</b>	<b>334 (100.0)</b>	<b>73 (100.0)</b>

	500 - 999	1,000 - 1,999	over 2,000	total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16 (22.2)	10 (19.2)	7 (25.0)	127 (19.9)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11 (15.3)	9 (17.3)	7 (25.0)	112 (17.6)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7 (9.7)	3 (5.8)	0 (0.0)	44 (6.9)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6.9)	7 (13.5)	3 (10.7)	62 (9.7)
(5)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6 (22.2)	9 (17.3)	7 (25.0)	122 (19.1)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실시요청	5 (6.9)	5 (9.6)	1 (3.6)	41 (6.4)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2 (16.7)	9 (17.3)	3 (10.7)	130 (20.4)
<b>total</b>	<b>72 (100.0)</b>	<b>52 (100.0)</b>	<b>28 (100.0)</b>	<b>638 (100.0)</b>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만을 분석하였음.  
 주) 다중응답, 응답자 165명, 응답건수 638건

###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한 대처

####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문제를 사측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Table 8과 같이 응답자(189명)의 74.1% (140명)로 나타났다. 요구사항은 응답건수(156건)의 34.0%(53건)가 작업공정 변경에 따른 임시 작업환경 측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상하지 못한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31.4%(49건)로 나타났다.

한편, 사측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문제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회수는 Table 9와 같이 연간 평균 4.46회로 나타났으며,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

**Table 8.** Claim fo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문제를 사측에 시정·개선 요구 제기 경험(n=189)	Yes	140(74.1)
	No	49(25.9)

question	answer	frequency(%)
시정·개선 요구 사항 <sup>1)</sup> (n=156)	예상하지 못한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49(31.4)
	보건문제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구	20(12.8)
	작업공정 변경에 따른 임시 작업환경 측정 요구	53(34.0)
	기타	34(21.8)

주) 다중응답 1) 응답자 112명, 응답건수 156건

**Table 9.** The frequency of claims and resolution to the problem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The frequency of claims <sup>1)</sup> (n=93)	1 time	12(12.9)
	2 times	31(33.3)
	3 times - 10 times	42(45.2)
	over 11 times	8( 8.6)
The frequency of acceptance <sup>2)</sup> (n=82)	1 times	14(17.1)
	2 times	30(36.6)
	3 times - 10 times	32(39.0)
	over 11 times	6( 7.3)
resolution to the problem (n=104)	improvement	95(91.3)
	non-improvement	6( 5.8)
	the others	3( 2.9)

주 1) 평균 4.46회 표준편차 4.96 2) 평균 3.78회 표준편차 4.03

회수는 연간 평균 3.78회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문제의 해결여부는 응답자 (104명)의 91.3%(95명)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사항을 사측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213명) 중 시정될 때까지 계속 요구한다가 39.0%(8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업장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36.6%(78명), 사업장 노동조합에 문제제기 10.8%(23명) 순으로 나타났다.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1) 기초소양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감독관은 Table 11과 같이 응답자(215명)의 81.4%(175명)가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소양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응답자 (215명)의 18.6%(40명)로 나타났으며, Table 12와 같이 그 이유는 회사측 사정 23.7%(9명), 개인사정 21.1%(8명), 기초소양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18.4% (7명) 순이었다.

**Table 10.** Problem solving methods health (unit: persons, %)

question	frequency(%)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요구	83(39.0)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	17( 8.0)
사업장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78(36.6)
사업장 노동조합에 문제제기	23(10.8)
사업주 단체에 문제제기	5( 2.3)
산재예방전문단체에 문제제기	2( 0.9)
기타	5( 2.3)
total	213(100.0)

**Table 11.** The basis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the basis training (n=215)	Yes	175(81.4)
	No	40(18.6)

**Table 12.** Reason for no participation to the basis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frequency(%)
company reasons	9(23.7)
private reasons	8(21.1)
no information about the basis training	7(18.4)
the others	14(36.8)
total	38(100.0)

기초소양교육 이수 여부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과 10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000인 이상 사업장은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감독관 비율이 전체 평균(81.4%)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반면 300인 이상-499인 이하 사업장, 5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과 1,000인 이상-1,999인 이하 사업장은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감독관 비율이 전체 평균(81.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전문화교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전문화교육을 받은 감독관은 Table 14와 같이 응답자(213명)의 48.4%(103명)가 전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화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응답자 (213명)의 51.6%(110명)로 나타났으며, Table 15와 같이 그 이유는 전문화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40.4%

**Table 13.** Participation to the basis training by the business size (unit: persons, %)

size (n=215)	the basis training		total
	Yes	No	
under 49 persons	4(100.0)	0( 0.0)	4(100.0)
50 persons - 99 persons	20(76.9)	6(23.1)	26(100.0)
100 persons - 299 persons	87(79.8)	22(20.2)	109(100.0)
300 persons - 499 persons	22(81.5)	5(18.5)	27(100.0)
500 persons - 999 persons	20(83.3)	4(16.7)	24(100.0)
1,000 persons - 1,999 persons	14(93.3)	1( 6.7)	15(100.0)
over 2,000 persons	8(80.0)	2(20.0)	10(100.0)
total	175(81.4)	40(18.6)	215(100.0)

**Table 14.** The advanced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The advanced training (n=213)	Yes	103(48.4)
	No	110(51.6)

**Table 15.** Reason for no participation to the advanced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frequency(%)
company reasons	25(24.0)
private reasons	19(18.3)
no information about the advanced training	42(40.4)
the others	18(17.3)
total	104(100.0)

**Table 16.** Participation to the advanced training by the business size (unit: persons, %)

size (n=215)		the advanced training		total
		Yes	No	
	under 49 persons	2(50.0)	2(50.0)	4(100.0)
	50 persons - 99 persons	13(50.0)	13(50.0)	26(100.0)
	100 persons - 299 persons	46(42.2)	63(57.8)	109(100.0)
	300 persons - 499 persons	16(61.5)	10(38.5)	26(100.0)
	500 persons - 999 persons	12(50.0)	12(50.0)	24(100.0)
	1,000 persons - 1,999 persons	9(64.3)	5(35.7)	14(100.0)
	over 2,000 persons	5(50.0)	5(50.0)	10(100.0)
	total	103(48.4)	110(51.6)	213(100.0)

(42명), 회사측 사정 24.0%(25명), 개인사정 18.3%(19명) 순이었다.

전문화교육 이수 여부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감독관의 전체 평균(48.4%)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반면 50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300인 이상-499인 이하 사업장, 5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과 1,000인 이상-1,9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감독관의 전체 평균(4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2.5.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 1)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게 하였을 때, Table 17과 같이 제1순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가 42.5%(91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 강화 25.2%(54명) 순이었다. 제2순위는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34.4% (72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26.3%

(55명) 순이었다. 또한 가중치 없이 다중응답의 전체 순위는 응답건수(423건)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가 34.5% (146건)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은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22.5%(95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 내 안전관련 교육 강화 19.4%(8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Table 18과 같이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 관련 교육 강화’ 항목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50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10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 300인 이상-499인 이하 사업장, 5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과 1,000인 이상-1,9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항목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2) 지역협의회(소구역 또는 업종협의회) 참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소구역 또는 업종협의회)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참여경험이 있는 감독관은 Table 19와 같이 응답자(214명)의 76.6%(164명)로 나타났으며, 이들(153명) 중 35.9% (55명)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매우 도움, 그리고 57.5% (88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지역협의회(소구역 또는 업종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감독관은 응답자의 23.4%(50명)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해당 모임에 대해 알지 못해서가 53.5%(2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사측 사정과 개인 사정이 각각 14.0%(6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7.** Activation method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unit: persons, %)

question	first	second	total <sup>1)</sup>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 관련 교육 강화	54 (25.2)	28 (13.4)	82 (19.4)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21 ( 9.8)	17 ( 8.1)	38 ( 9.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25 (11.7)	37 (17.7)	62 (14.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91 (42.5)	55 (26.3)	146 (34.5)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23 (10.7)	72 (34.4)	95 (22.5)
total	214 (100.0)	209 (100.0)	423 (100.0)

주 1) 응답자 214명, 응답 건수 423건

**Table 18.** Activation method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by the business size

(unit: persons, %)

	under 49	50 - 99	100 - 299	300 - 49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 관련 교육 강화	3 (37.5)	11 (22.4)	42 (19.6)	11 (20.4)
노동조합의 안전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0 (0.0)	3 (6.1)	22 (10.3)	4 (7.4)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1 (12.5)	5 (10.2)	32 (15.0)	9 (16.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2 (25.0)	20 (40.8)	71 (33.2)	19 (35.2)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2 (25.0)	10 (20.4)	47 (22.0)	11 (20.4)
<b>total</b>	<b>8 (100.0)</b>	<b>49 (100.0)</b>	<b>214 (100.0)</b>	<b>54 (100.0)</b>

	500 - 999	1,000 - 1,999	over 2,000	total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안전 관련 교육 강화	6 (12.5)	5 (16.7)	4 (20.0)	82 (19.4)
노동조합의 안전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6 (12.5)	3 (10.0)	0 (0.0)	38 (9.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7 (14.6)	5 (16.7)	3 (15.0)	62 (14.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6 (33.3)	11 (36.7)	7 (35.0)	146 (34.5)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13 (27.1)	6 (20.0)	6 (30.0)	95 (22.5)
<b>total</b>	<b>48 (100.0)</b>	<b>30 (100.0)</b>	<b>20 (100.0)</b>	<b>423 (100.0)</b>

주) 다중응답, 응답자 214명, 응답건수 423건

**Table 19.** Participation to the regional council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Participation to the regional council (n=214)	Yes	164(76.6)
	No	50(23.4)

question	answer	frequency(%)
Participation of a year <sup>1)</sup> (n=144)	1 time	54(37.5)
	2 times - 3 times	83(57.6)
	4 times - 6 times	7(4.9)
activation (n=153)	very good	55(35.9)
	average	88(57.5)
	no good	10(6.5)
reason (n=43)	company reasons	6(14.0)
	private reasons	6(14.0)
	no information	23(53.5)
	the others	8(18.6)

주 1) 평균 1.78회 표준편차 0.81

**Table 20.**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working period and participation to the regional council by the working day

(unit: persons, %)

	under 1 year	1 year - under 2 years	2 years - under 4 years	4 years - under 6 years	over 6 years	total
Participation	17 (43.6)	26 (72.2)	46 (85.2)	40 (88.9)	35 (87.5)	164 (76.6)
non-Participation	26 (56.4)	10 (27.8)	8 (14.8)	5 (11.1)	5 (12.5)	50 (23.4)
<b>total</b>	<b>164 (100.0)</b>	<b>36 (100.0)</b>	<b>54 (100.0)</b>	<b>45 (100.0)</b>	<b>40 (100.0)</b>	<b>214 (100.0)</b>

한편,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지, 1년 미만인 감독관(39명)의 경우, 43.6%(17명)만이 지역협의회(소구역 또는 업종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감독관(175명) 중 84.0%(147명)가 지역협의회(소구역 또는 업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이 4년 이상~6년 미만인 경우, 가장 활발한 참여(88.9%)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논의

#### 3.1. 위촉의무 및 위촉 사업장의 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본문 Table 17과 Table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현재 위촉의무사항이 아닌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촉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야 사업주에 대한 인식 제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2003년 6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에(시행령제45조의2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시행령제25조)으로 확대되어 100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과 유해·위험업종의 50인~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위촉범위 확대가 50인~99인 유해·위험 사업장까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발생율(1.19%)은 2004년의 경우, 전체 사업장 재해발생율(0.85%)의 1.4배 이상이다<sup>10)</sup>. 이들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또는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6조) 또는 산업보건(산안법 제16조) 등의 선임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이 전혀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이다<sup>11)</sup>.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의거한 노사협의회는 설립 의무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를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안전보건조직 구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 범위를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조건인 30인 이상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협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업무협조 정도에 대해 Table 21과 같이 응답자(215명)의 53.0%는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47.0%는 보통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1. Cooperation of the safety/health manager wit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unit: persons, %)			
	under 49	50 - 99	100 - 299	300 - 499
very good	1 (25.0)	12 (46.2)	60 (55.0)	17 (63.0)
average	2 (50.0)	9 (34.6)	41 (37.6)	9 (33.3)
no good	1 (25.0)	5 (19.2)	8 (7.3)	1 (3.7)
total	4 (100.0)	26 (100.0)	109 (100.0)	27 (100.0)

	500 - 999	1,000 - 1,999	over 2,000	total
very good	12 (50.0)	5 (33.3)	7 (70.0)	114 (53.0)
average	12 (50.0)	9 (60.0)	3 (30.0)	85 (39.5)
no good	0 (0.0)	1 (6.7)	0 (0.0)	16 (7.5)
total	24 (100.0)	15 (100.0)	10 (100.0)	215 (100.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장의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협력의무 관련 규정을 법령에 명시함이 필요하다.

### 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순회점검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197명), 사업장 순회점검이 필요하나,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34.5%) 또는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순회점검(60.9%)을 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측에서 순회점검을 허락하지 않아 순회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2.5%)으로 나타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를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법령에 명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개선·시정 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선건의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 등과 같은 기구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할 기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개선건의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보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시간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기초소양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18.6%, 그리고 전문화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1.6%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본문 Table 11과 Tabl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측 사정내지 개인사정이 42~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받을 시간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4. 결론 및 정책제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지, 금년(2006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법령과 행정규정(노동부예규) 개정·보완을 통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토대 구축이 이루어졌으나, 효율화·체계화를 통한 사업장 노사 자율적인 산재예방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미비점 및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책제언한다.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위촉범위 확대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의 협력 의무
-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순회점검 보장
- 4) 사업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개정·시정건의사항 이행 의무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 및 이를 위한 시간 보장

Table 22. A revised bill for the activ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개 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전과 같음. ③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건의한 개정·시정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협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는 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사업장 공동 순회점검이 포함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는 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촉된(임명된) 사람과 협력하여야 한다.

#### 개 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위촉대상 등)

- ① 전과 같음.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전과 같음.
  3. 전과 같음.
  4. 전과 같음.
-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이다.
  1. 전과 같음.
  2. 전과 같음.
  3. 전과 같음.
  4. 전과 같음.
  5. 전과 같음.
  6. 전과 같음.
  7.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 전과 같음.
  9. 전과 같음.
  10. 전과 같음.
- ③ 전과 같음.
- ④ 전과 같음.
- ⑤ 전과 같음.

주) 짚은 글씨는 개정(안)의 내용임.

#### 참고문헌

- 1) 윤조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능력향상과 자유로운 참여보장 방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산업안전공단, pp. 3~52, 1999.
- 2) 노동부(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세부시행계획」, pp. 4~6, 1996.
- 3)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0-2004)」, pp. 92~93, 2000.
- 4)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 pp. 68~69, 2004.
- 5)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안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IMF 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연구원/UNDP(유엔개발계획), pp. 1~74, 1998.
- 6) 윤조덕, 한충현, “노사참여적 예방활동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pp. 1~78, 2005
- 7) 박태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

- 성화 방안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pp. 1~22, 1998.
- 8) 박태순,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pp. 80~125, 2005.
- 9) 이영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p. 39~52, 2002.
- 10) 노동부, 2004 산업재해분석, pp. 32~33, 2005.
- 11) 최수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p. 3~38, 2002.